

서울고등법원 2020. 12. 15 선고 2019나20341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081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5 선고 2019나20341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5010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재근, 조희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2.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5010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5,70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제시한 성능개선방안을 적용하면 군 운용 적합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된 항목의 상당수에 대해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여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위 성능개선방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점,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시제품이 기술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는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머지 계약대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제품이 운용시험평가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은 신의칙에 따라 반환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 을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Ⅰ, Ⅱ안으로 구성된 제2차 성능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경 전문가 기술검토를 거쳤는데, 그 전문가 기술검토에서는 ① ‘원고가 제시한 성능개선방안 Ⅰ, Ⅱ안의 기술적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Ⅰ안의 경우 헤더 최적화 등에 대한 기술분야 추가검토가 필요하고, Ⅱ안의 경우 HW의 무게 증가에 따른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 ‘Ⅱ안이 근본적인 방안이나 무게 증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Ⅰ안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② ‘원고가 제시한 성능개선 데이터를 볼 때 성능향상은 기대된다’고 하면서도 ‘야전환경에서 군 요구 성능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원고가 제시한 성능개선 결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1홉 대비 2홉 자동중계의 경우 음성품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능개선방안 1안을 적용할 경우 야전환경에서의 음성품질 개선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사실, (2) 원고는 2017. 7.경 위와 같은 전문가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경 다시 전문가 기술검토를 거쳤는데, 그 전문가 기술검토에서는 ‘2홉 성능의 경우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제시한 자체시험 결과는 Non-IP 모드의 1홉 성능을 제시한 것으로 2홉 환경 하에서의 자체시험 결과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판단할 수 없다’, ‘Non-IP 모드의 2홉 성능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요청한 성능확인 시험을 수행할 필요성이 낮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시한 위 성능개선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제품의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변경된 납기일인 2016. 12. 30.로부터도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가진 원고의 성능개선방안을 피고가 수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시제품 또는 거기에 적용된 기술이 피고의 이익으로 직접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역시 이 사건 시제품의 개발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제품을 인도받아 차기 소부대 무전기의 후속 개발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재, 판사 박혜선, 판사 강경표